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-126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소관 부서 변경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현행화하여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21조)

나.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(안 제25조)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없음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2. 11. 3. ~ 11. 8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 의견

원 안	수 정 안
제2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<u>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</u>	제2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<u>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u>

5)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: 수정의결(2022. 11. 10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”를 “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재정관리국장, 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디지털재정과장”을 “새마포담당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<u>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② <u>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재정관리국장이,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.</u></p> <p>제25조(간사) ① (생략)</p> <p>② 간사는 <u>디지털재정과장이 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 ----- --<u>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u></p> <p>② <u>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<u>위원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5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 <u>새마포담당관</u>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에  
해당하지 않음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재정관리국 디지털재정과 황인영
연 락 처	02-3153-8532